

설계자	확인자	설계년월일	2019.08. .

인도네시아 반타끄방 매립지 복원사업  
타당성조사

과 업 지 시 서

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

# 목 차

I. 과업지시서.....	1
1. 개요.....	1
2. 과업기간.....	2
3. 과업내용.....	2
4. 과업의 일반원칙.....	5
5. 과업수행 방법.....	8
6. 과업성과품 제출.....	9
7. 보안대책.....	10
II. 예정공정표.....	12

# I. 과업지시서

## 1. 개 요

□ 과업명 : 인도네시아 반타끄방 매립지 복원사업 타당성조사

### □ 과업목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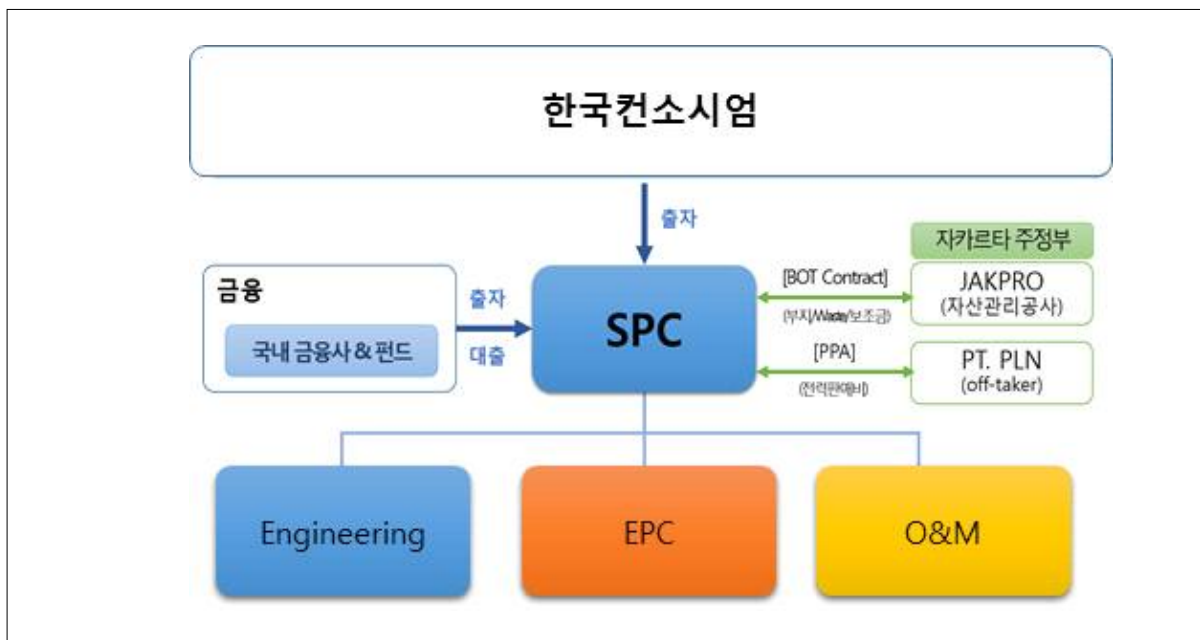
- 인도네시아 반타끄방 매립지 복원사업은 자카르타 남동부 22km에 위치한 반타끄방 매립장내 하루 1천톤의 쓰레기 소각 및 전력 생산용량 25MW급 Waste-to-Energy 시설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사업임
- 본 과업에서는 매립지 복원사업 시행을 위한 폐기물 발생특성 조사, 기술적 타당성 분석, 사업비 및 운영비 산정, 경제성 분석 및 사업추진 계획 등을 수립하고, 이에 대한 기술·법률·재무적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며,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사업주의 투자 결정 및 인도네시아 유관 기관과의 각종 계약 협상 등에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

[반타끄방 매립장 위치 및 현황]



□ 프로젝트 개요

- 프로젝트명: 인도네시아 반타끄방 매립지 복원사업
- 사업추진방식: BOT (Build-Own-Transfer)
- 사업기간: 준비기간 5년 (공사기간 포함), 운영기간 20년
- 총사업비: 약 2,796억원 (추정)
- 금융조건: Equity 20%, Debt 80% (잠정)
- 사업추진 구조



2. 과업기간 : 계약일로부터 2019년 12월 24일까지

3. 과업내용

1) 기술 분석

□ 입지 및 현장조사

- 사업수행부지 입지여건 세부 검토

- 현황측량
  - 사업예정부지의 정확한 경계를 위한 현황측량 및 사업부지 내 지장물조사
- 지반조사
  - 사업예정부지를 대상 지반특성을 파악 지반조사 수행
- 수질분석
  - 건설 및 운영 용수공급을 위한 주변 수체자원의 수질분석 실시
- 폐기물 성상분석
  - 폐기물의 물리적, 화학적 특성 파악 및 기본설계 기초자료 수집
- 현지조사
  - 사업대상지의 부지여건, 주변지역 현황 등 현지조사와 관련 기관과의 사업추진을 위한 협의 등

#### □ 기술검토

- 기술적 솔루션 검토, 장단점 분석, 최적기술 선정
- 전처리·발전설비 계통설계 검토 및 발전량 추정
- 발전소 건설, 운영을 위한 각종 기술사항 확인 및 비용 추정

#### □ 기본설계

-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적기술 활용방안의 도면(공정도, 배치도 등) 및 문서화(보고서 등)

#### □ 사업비 산정

- 기본설계를 근거로 한 구성요소별 직접비 및 사업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간접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 산정

## 2) 법률·세무 분석

#### □ 사업추진을 위한 제반 인허가, 적용 법률 검토 및 협상지원

- PPP 사업 추진, PPA 협상, 법인설립, 발전사업·건설 면허, 안전·보건·노동 부문 등

- 본 계약서 절차조사 및 작성지원, 주정부 협상 지원

#### 진행리스크

- 계약추진, 건설, 운영단계 법적 위험 파악 및 헷지방안 검토

#### 금융·세제 관련

- 자금의 수탁 및 운용방법, 자금 집행방식 등 금융법 관련 검토
- 법인세, 관세 및 각종 투자인센티브 등 세금관련 검토

### 3) 재무 분석

#### 금융조달 및 재무타당성

- 사업시행에 필요한 투자비용 산정·배분 및 재원조달 검토
- 투자계획, 현금흐름, 세제·법률검토사항 반영 및 사업성 추정 가능한 재무 모델 분석
- 적정 Tipping Fee 산출 및 주요인자에 의한 민감도 분석

#### 집행계획수립

- 추진일정을 고려한 예산배정 및 사업비 지출계획 수립

#### 사업성 분석

- 사업의 재무적 타당성 판단을 위한 수익률, 원리금 상환가능성 및 민감도 분석 실시
- 전력시장 및 인도네시아 Waste to Energy 제도 분석
- 사업관련 담보, 정부(지방) 보증범위 및 사업위험 분석

### 4) 성과품 작성

#### 도서작성

- 기술적, 재무적, 법률적 검토결과의 문서화
- 각종 성과물의 한글·영문번역
- IM(Information Memorandum) 작성 등

#### 5) 기타 요청 사항

- 자카르타주정부 사후협상 및 계약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기관의 사후지원

### 4. 과업의 일반원칙

#### □ 자료활용

- 시장조사와 관계문헌은 국내 기존자료는 물론 외국의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여 활용하여야 하며, 통계 등을 반영할 경우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활용하여야 함
- 본 과업수행을 위해 공공기관, 전문연구기관의 보고서, 각종 행정통계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함

#### □ 과업수행원칙

- 최종낙찰자(이하 ‘과업수행자’)는 과업수행 상의 주요사항과 본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수행해야 함
- 본 과업수행 시 세부 추진일정 및 자료협조 등 관련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수행해야 함
- 본 과업의 수행상 시장조사, 법률, 기술, 수요 등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과업을 수행할 경우 위탁범위 및 내용, 위탁금액, 위탁의 필요성, 수탁자 선정의 적정성 등을 명시하여 우리 공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함
- 외부업무위탁을 수행하는 기관을 포함하여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·기술적 제비용과 문제처리는 과업수행자(계약상대자, 외부전문기관 포함)가 부담해야 함

- 과업수행자는 수행연구자별 세부 업무범위 등을 정하여 우리 공사와 협의를 통해 최종확정하여야 함

#### □ 과업의 변경

- 계약 후 과업지시서 및 설계예산내역서의 내용은 계약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, 과업수행 중 여건변화, 과업 내용의 추가 등으로 우리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업 범위 및 내용 등을 변경할 수 있음
- 본 과업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는 우리 공사의 사전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음
- 기타 과업지시서 및 설계예산내역서의 해석상 의문이나 문제가 있을 때는 당사자가 협의하기로 하며 협의가 안 될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름

#### □ 일반조건

- 과업진행에 대하여 우리 공사의 설명요구가 있을 때는 과업책임자와 책임연구원이 참석하여 과업내용을 설명하고 우리 공사의 수정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
- 각 부문별 과업 항목은 각 세부항목별로 수행일정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고 계획에 따라 추진해야 함
-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제반자료와 정보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임의로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, 임의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제반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짐
- 과업수행 상 경비는 계약된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초과 사용하는 경우 과업수행자가 부담하며, 사용내역에 대한 집행근거(영수증 등)는 준공 시 제출하여 부당하게 지출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서는 사후에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음
- 기타 과업의 일반지침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주요사항은 우리 공사의 지시에 따라야 함



## □ 특별조건

-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며, 과업수행의 성과품은 우리 공사가 소유함
  - ※ 우리 공사는 과업수행자의 동의 없이 성과품을 사업주에게 제공할 수 있음
- 사전승인을 득한 연구인력으로 과업을 수행하며, 변경할 경우, 기존 인력보다 업무수행역량이 높은 자로 한정하며, 우리 공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

## □ 성과물 작성

- 사용되는 용어는 국문 및 영문으로 통일성 있게 작성하며, 전문용어는 ( ) 안에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기하며, 교육부제정 한글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야 함
- 작성된 최종보고서 원안은 우리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이에 필요한 자료제출 및 보충설명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, 그 결과 성과품이 과업지시서 내용과 상이 또는 미흡하여 우리 공사에서 보완을 요구할 경우에는 즉시 보완하여 계약기간 내에 인쇄·납품해야 함
- 성과품에 대한 작성방법, 양식, 활자크기, 지질 및 표지색 등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·결정해야 함
- 공정보고, 현지조사, 착수보고, 중간보고, 최종보고 등 과업수행자가 감독관에게 제출하는 모든 보고 및 관련자료는 서면과 전자파일로 제출해야 함
-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주로부터 <사업주 수행> 과업(해당 시)의 결과물을 제공받아 과업내용 전체를 아우르는 최종 성과물을 작성하여야 함. 이를 위한 세부 방안은 감독관 및 사업주와 협의하여 결정함
  - ※ <사업주 수행> 과업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책임을 지고 수행

## □ 기 타

- 과업수행자는 우리 공사가 과업지시서의 범위 내에서 세부적으로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해야 함

- 용역성과보고서 등 관련문서는 보안관련 제 규정을 준수하여 사전에 보안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함
-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수행 중 발생한 각종 자료와 성과품을 용역 준공 시에 전부 납품하여야 하며, 성과품은 우리 공사의 승인 없이는 추가로 인쇄할 수 없음

## 5. 과업수행 방법

### □ 전문가 자문

- 본 과업내용 관련 필요시 관련기관의 실무책임자 또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선정하여 자문계획(자문회의, 토론회, 워크숍 등)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실시하여야 함

### □ 현지조사

- 사업대상국의 인문, 자연, 경제, 법률 및 사업환경 조사 등 내실 있는 과업수행을 위해 사업대상국 현지조사를 실시해야 함
- 과업수행자는 조사지역 및 일정, 조사자(과업책임자 및 참여연구원, 위탁 외부전문기관 포함) 등 해외조사계획을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고 실시함
- 과업수행자는 해외조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조사 관련 활동 내역 등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함

### □ 공정보고 및 추진현황 회의

- 매월 말 기준으로 과업의 추진상황을 작성하여 용역진도보고를 익월 5일 까지 제출해야 함

## 6. 과업성과품 제출

### □ 착수보고

-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, 보안각서 및 기타 필요 서류를 첨부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
  - 착수보고는 과업수행자가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과업 주요내용을 확인하고, 이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방법, 과업참여자 명단, 과업수행조직의 편성 및 공정계획 등을 포함하여 보고해야 함

### □ 중간보고

- 중간보고는 감독관과 보고일정을 협의하고 보고서 5부를 제출하여야 하며, 동 보고서에는 착수보고 시 확인한 주요내용에 대한 과업수행방법을 구체화하고, 검토한 내용의 잠정결론 및 세부내용이 포함되어야 함
  - 해당 사업의 현지 관련기관 협의를 위해 영문으로 작성한 중간보고서 및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전자파일로 제출하여야 함(협의 시 요약보고서로 대체 가능)

### □ 최종보고

- 최종보고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일정을 결정하고 조사연구한 최종 내용을 보고해야 함. 단, 최종보고에서 제안된 수정 내용을 감안하여 최종보고서를 작성해야 함
- 최종보고서는 본 제안요청서의 성과물작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며 20부를 제출하여야 함. 또한 최종보고서, 기타 참고자료 및 재무모델의 전자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
  - 해당 사업의 현지 관련기관 협의를 위해 영문으로 작성한 최종보고서 및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전자파일로 제출하여야 함

### □ 수정보고서

-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서 제출 후 5개월 이내에 추정수입 및 운영비 추정

등에 사용된 기초자료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본 변경사항을 반영한 수정 보고서를 우리 공사의 검토를 받은 후 인쇄하여 10부를 제출하여야 하며, 이 때 수정보고서(국·영문), 수정 참고자료, 수정 재무모델의 전자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

## 7. 보안대책

- 과업책임자는 국토교통부보안업무시행세칙 제54조(용역업체에 대한 보안 대책)를 준수하여야 하며, 본 과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동 세칙에 의한 보안각서(별첨)를 제출받아 과업착수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함
- 과업수행자는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, 분실,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,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, 자료 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, 대외비와 일반자료보관함으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함
- 과업참여자의 교체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고,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
- 과업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보안규정 이행여부에 대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
- 최종보고서 등 성과물(확정안 포함)은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생산·관리하여야 함
- 과업수행 중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우리 공사의 사전 승인 없이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
-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를 이용하고 보안책임자가 입회하여야 하며, 성과품에는 발간근거 명시(업체명, 인가근거, 참여자, 발간일자) 및 원지, 폐지, 잉여분 회수 등 소각을 철저히 하여야 함
- 과업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품 작성 시에는 참여 인원을 최소화하되,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함

- 과업수행 과정 중 각종 회의 시 배포될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때는 필요한 최소부문만 생산해야 함
-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, 기타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짐
-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산출된 각종 자료에 대하여 보안 필요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안관계 제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함
- 과업내용 중 일부를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을 활용하거나,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과업을 수행할 경우에도 동일한 보안대책을 수립/시행하여야 함
- 성과품은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함

## II. 예정공정표

세부추진과업		과업기간(개월)		
		1개월	2개월	3개월
기술	입지조사, 기술검토, 기본설계, 사업비 산정 등			
법률·세무	법률·인허가·제도 검토 및 금융·세제 검토 등			
재무	금융조달·재무타당성 및 사업성 분석 등			
현장조사	측량, 지반조사, 수질·폐기물 분석 등 현지 조사			
보고서 작성				
보고회		착수 보고	중간 보고	최종 보고
과업 진도율(%)	당기	30	40	30
	누적	30	70	100